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6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안 제1조, 제2조의2, 제15조 및 제 23조)	2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31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 제14조에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에 따라 관련 법률로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추가 및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부문별 위원회로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가하여 노동약자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5조의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안 제1조, 제2조의2, 제15조 및 제23조)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법」의 목적규정 상 노동위원회의 업무에 ‘분쟁해결 지원’을 추가하고,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며, 노동위원회의 부문별위원회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위원회가 노무제공 분쟁 해결 지원 관련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또는 자료제출·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u>판정 및 조정(調整)</u>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판정, 조정(調整) 및 분쟁해결 지원</u> ----- ----- ----- -----.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u><신설></u>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 ----- ----. 1.·2. (현행과 같음) 3. 「 <u>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u> 」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
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생략)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
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
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
원회를 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신설>

② ~ ⑨ (생략)

<신설>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
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
(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
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
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
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
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위원회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제8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
회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분쟁 조정,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
다.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

-----제3

호 및 제4호-----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 ----- -----.
<신 설>	②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당사자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변상한다.	④ ----- 제1항 및 제2항----- ----- ----- -----.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분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 제5항----- ----- -----.

나. 검토의견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같은 법 제2조의2¹⁾는 노동위원회의

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소관 사무를 열거하고 있고, 제15조제1항²⁾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와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부문별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노동약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³⁾의 의결을 전제로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법」에 해당 사무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 2) 「노동위원회법」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판위원회
 2. 차별시정위원회
 3. 조정(調停)위원회
 4. 특별조정위원회
 5. 중재위원회
 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 3) 임의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166호

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상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문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노동약자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약자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지원하는 공익위원을 둔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 또는 분쟁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노동관계 업무 또는 분쟁조정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관계 업무 또는 분쟁조정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 또는 분쟁조정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중 3명 이내의 공익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1.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
2. 노무제공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분쟁
3.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⑧ 조정조서에는 분쟁 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⑩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제6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⑪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535